

도서관의 현안문제 정책자료

■ 본 자료는 민정당 국책연구소의 “도서관 발전방안” 연구와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도서관체제확립 및 운영활성화방안” 연구의 정책자료로 참고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회원 여러분의 참고를 위하여 게재하는 것입니다.

I. 도서관행정부서 : 「도서관·정보과」

1. 「도서관·정보과」설치의 필요성

현대는 정부가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도서관 및 자료센터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각종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의 도서관 기능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술 및 기술관계 지식정보 활동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시키는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지식 정보활동이 저조하고 조화로운 학술 및 기술 정보 유통체제의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래 지식 정보 활동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지만, 최근 지식 정보나 출판물의 수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또 사회활동이 전문화·다양화되어 지식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으로써 정보활동 자체의 양상도 복잡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원활한 지식 정보 유통을 도모하려면 전국의 도서관들을 개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화 하는 등 전체로서 조화된 도서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나 조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민주정의당에서 성안·발표한 바 있는 도서관 발전방안도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다.

.....우리나라 도서관의 침체와 국민독서의 부진에는 관계정책과 행정의 부실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 도서관 발전의 방향정립과 운영의 내실화 및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확고하고 일관성있는 시책이 극히 빈약하였으며, 따라서 행정적 통제 및 지도·지원

도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서관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확보, 법체제의 정비, 부실 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가 문교부내에 없어, 도서관 행정의 불모현상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는 도서관에 관한 국가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하는 주체적 역할의 전담부서가 없음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 육성의 기본적인 조치로 소관부처인 문교부내에 최소한 「과」 단위의 도서관행정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民主正義黨 「圖書館發展方案」 p. 10 - 13)

이렇듯, 도서관 활동에 관한 기본정책의 구체화, 각종 도서관의 육성 및 지식 정보 유통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도서관 활동의 진흥을 도모하려면, 문교부내에 「도서관·정보과」의 설치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2. 「도서관·정보과」의 주요기능

- ① 각종 도서관활동을 위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구상·입안 및 추진
- ② 정부기구내 도서관활동 추진에 관련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 ③ 전국 범위의 학술 및 기술정보 네트워크 형성 및 지도
- ④ 각종 도서관활동에 관한 국내외 동향의 조사 및 분석
- ⑤ 도서관 전문직 양성을 위한 교육계획의 입안 및 추진
- ⑥ 국가적으로 시급한 분야의 도서관활동 확대를 위한 정부보조금 제공
- ⑦ 국제적인 도서관활동에의 적극 참여

3. 「도서관·정보과」의 관장업무 개요

1계 (총괄 및 국가대표도서관)

- ① 도서관발전 정책수립 및 추진
- ② 도서관·정보발전위원회 관련 업무
 - 국가도서관정책 심의 요청
 - 국가도서관정책 의결사항 수행
 - 국가도서관정책 시행 결과 보고
- ③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지원
 - 국제도서관협력 (75국 291처 10기구)
 - 납본업무
 - 국가단위 서지사업
 - 사서직 직무교육

- 사서자격증 관리
- 문헌정보처리기법 표준화
- ④ 각종 도서관의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
- ⑤ 도서관전문직 양성 및 수급 계획
- ⑥ 도서관법시행에 관한 사항
- ⑦ 도서관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 법률 4
 - 대통령령 11
- ⑧ 도서관간의 상호협력계획
 - 분담수서, 협동목록, 공동이용 및 협동보존
- ⑨ 전국 도서관의 전산화 계획
- ⑩ 국민독서진흥사업
 - 독서환경의 조사분석
 -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관련기관·단체활동의 조정 및 장려
 - 성과의 분석 및 평가
- ⑪ 국내의 도서관활동의 조사·분석
- ⑫ 사서자격 국가고시 관리
- ⑬ 도서관 육성을 위한 민간지원 유도
- ⑭ 도서관 비품 및 용품의 개발 및 표준화
- ⑮ 도서관 및 독서운동 관련 행사의 계획 및 추진
 - 독서주간, 도서관주간 등
- ⑯ 도서관 전문직 단체의 지원·지도·감독
- ⑰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 문공부: 출판행정, 매체행정
 - 내무부: 공립공공도서관 설치·운영
 - 외무부: 국외자료조사·수집국제도서관과의 교류

2계(대학 및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부문〉

- ① 대학도서관 설치 및 육성계획 수립 시행
- ② 대학도서관 실태조사 및 평가
- ③ 대학도서관 운영의 지도 감독
 - 전국의 대학도서관 262개관
- ④ 대학도서관 제기준의 제정 시행
 - 직원, 시설, 자료, 운영 및 예산의 기준

- ⑤ 대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학술정보 유통에 관한 사항
- ⑦ 대학도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 기능 강화
- ⑧ 대학내 각종 연구시설의 학술자료 운영
(학교도서관 부문)
- ① 초·중·고교의 도서관설치 계획 수립 시행
- ② 학교도서관 운영 재원의 확보
- ③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 수급 및 배치
- ④ 학교도서관 운영 지도 감독
 - 전국의 학교도서관 4,758개관
- ⑤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분석 평가
- ⑥ 학교도서관 기준 제정 시행
 - 직원, 시설, 자료, 운영 및 예산
- ⑦ 독서지도 교육과정 운영

3계(공공·전문·특수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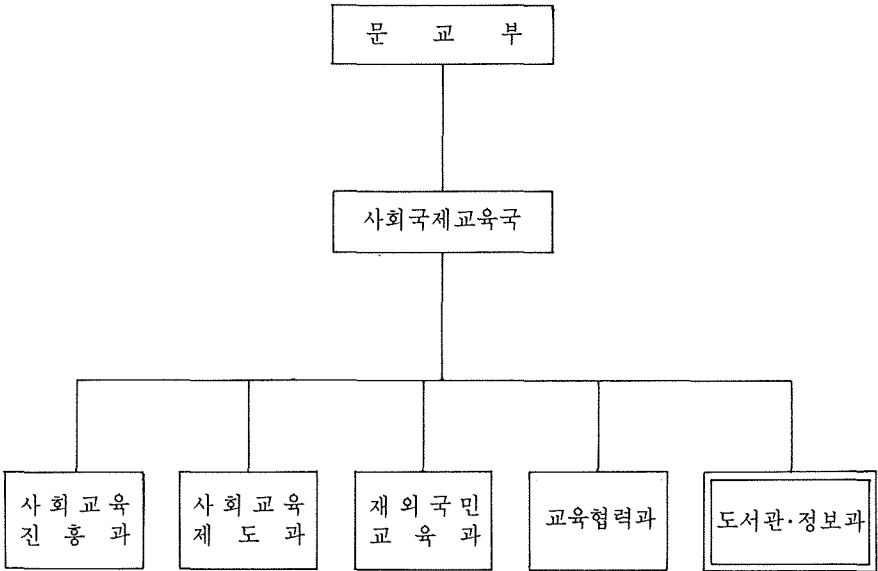
(공공도서관 분야)

- ① 공공도서관설치 육성계획 수립 시행
- ② 공공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설치 추진
- ④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고 보조
- ⑤ 내무부소관 공공도서관의 이관업무
 - 운영의 일원화
- ⑥ 공공도서관 기준의 제정 및 시행
 - 직원, 시설, 자료, 운영 및 예산
- ⑦ 지역센터 도서관에 관한 업무
- ⑧ 공공도서관 운영의 지도 감독
 - 전국의 168개 공공도서관
- ⑨ 공공도서관 운영실태의 조사 분석 평가
- ⑩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 지정명령, 정관 및 폐관에 관한 사항
- ⑪ 특수환경계층(장애자 등)에 관한 도서관 봉사 활성화 추진
- ⑫ 분관, 이동도서관 사업의 확충
- ⑬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전문·특수도서관)

- ① 전문·특수도서관의 등록 및 지도감독
- ② 각급 감독관청의 협조 및 조정

4. 「도서관·정보과」 직제 (안)



Ⅱ. 초·중·고등학교 “학생도서비” 부활의 필요성

1. 학생도서비의 변천과정 및 현황

- ①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발흥기인 1950-1960년대에는 학교도서관 운영비를 사친회비에서 면출하였음.
- ② 1970년 3월에 육성회법이 시행되면서(사친회가 육성회로 바뀜) 육성회비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비를 일체 지출하지 못하게 되었음.
- ③ 육성회법 시행 이후의 학교도서관 운영비는 학생자율적 경비인 (등록금고지서에는 학생회비임) 특별활동비에서 특별활동 반편성상의 「도서반」활동비 명목으로 얻어 쓰게 되면서 「학생도서비」라는 개념은 사실상 소멸되었음.
- ④ 학생회가 학도호국단으로 바뀌면서도 이 사정은 그대로 지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문제점

- ① 육성회법 시행 이후의 학교도서관은 그 운영예산을 일시에 상실하여 한동안 발전 하던 학교도서관이 극도로 침체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② 학생특별활동비에서 도서반환동비 명목으로 약간의 예산을 얻기는 하고 있으나 그 예산액이 불과 70~80만원 정도이며 소모품비와 운영관리비 등 도서관 운영비 전반을 이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도서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③ 또한 작금에 와서는 학생들의 특별활동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특별활동비 지출도 증대되어 도서반환동비의 지출이 더욱 위축되는 실정임.
- ④ 학교도서관운영의 재원상의 근거인 예산항목이 없어지면서 예산을 변칙적 방법으로 조달하게 되었으며, 또한 예산의 기준이 없어 각 시도별, 각급 학교별로 예산액의 차등이 발행하여 학교도서관은 생동하는 자료를 구입하지 못하고 황폐하여 지는 실정임.

3. 개선방안

- ① 중·고등학교 등록금 고지서의 내역에 「수업료」, 「육성회비」로 되어 있는 항목에 「학생도서비」를 독립항목으로 부활 신설하여 학생 1인당 월 300원 정도를 부과함.
- ② 국민학교는 학생 1인당 월 200원 정도를 「육성회비」에 포함시켜 징수하되, 현재의 「육성회비」를 인상하여 육성회비 운영지침서에 명시함.
* 원칙적으로는 학교도서관 운영비를 시비나 국고로 보조하여야 하나, 현재 교육세까지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는 실정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학생도서비」를 징수할 수 밖에 없음.

*참 고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학교 학생 1인당 월200원 분기당 200원 × 3개월 = 600원 연 간 600원 × 4분기 = 2,400원 학교당 2,400원 × 2,500명 (추정) = 6,000,000원</p>
<p style="text-align: center;">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300원 분기당 300원 × 3개월 = 900원 연 간 900원 × 4분기 = 3,600원 학교당 3,600원 × 2,500명 (추정) = 9,000,000원</p>

4. 행정조치

문교부에서 행정지시

Ⅲ. 국가문헌 납본제도

1. 현 황

- ① 민족문화유산의 완벽한 전승을 위하여, 국내에서 출판 또는 제작되는 모든 자료 (도서 및 비도서)의 망라적 수집과 그 영구보존에 근본목적이 있는 국가대표도서관의 주요기능임.
- ② 납본 대상자료를 “도서 기타 간행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비도서자료(음반, 필름, 테이프등)가 사실상 납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③ 무상납본은 주로 비매자료인 공간행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고 있음.
- ④ 유상납본은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고 정가의 50%를 보상하고 있음.
- ⑤ 유상납본인 일반도서의 경우 출판사등의 납본률은 약 70% 정도임.

1984년 일반도서 납본현황

총 출 판 량		납 본 량		납 본 률
납 본 종 수	납본소요책수	납 본 종 수	납 본 책 수	
19, 113종	38, 226책	13, 327종	26, 654책	69.7 %

- ⑥ 납본시기도 “발행일로부터 30일”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 잘 준수되지 않고 있음.

2. 문 제 점

- ① 급격한 양적증가에 따라 그 자료가치도 크게 증대되고 있는 각종 비도서 자료가 납본되지 않고 있음.
- ② 납본이행률이 저조하여 국가문헌 전량의 망라적 수집보존이 안되고 있음.
- ③ 납본시기가 늦어서 각종 서지정보의 편성·보급이 지체되고 있음.
- ④ 출판행정 및 출판계와 국가대표도서관과의 연계성이 전혀 없어서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 (ISBN)의 운영 등 서지정보

의 조정 및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⑤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국회사무처법”등에서 다른 목적으로 납본유사제도를 상호연계성없이 운영하고 있어서 납본의무자의 부담과 혼란이 야기됨.
- ⑥ 위와 같은 제 문제점은
 - 1) 도서관법을 비롯한 관계법규의 미비
 - 2) 출판인 등의 인식부족
 - 3) 보상금 예산부족
 - 4) 출판현황 파악의 곤란
 - 5) 납본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의 미약
 - 6) 국립중앙도서관 예산부족으로 납본촉진사업 등 부진
 - 7) 도서관정책 및 행정력의 빈약 등에 그 원인이 있음.

3. 개선방안

- ① 납본대상자료범위의 확대(도서관법 개정)
- ② 출판행정 및 납본유사제도와와의 연계성 강화(도서관법,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및 관계시행령 등 개정)
- ③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제도의 운영과 연계(도서관법 개정)
- ④ 벌칙의 강화(도서관법 개정)
- ⑤ 보상금 예산의 확충
- ⑥ 납본촉진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업 및 홍보의 강화
- ⑦ 도서관 행정력의 강화

주요국의 남본제도 현황

구별	법률	내용	관계법조문	남본법위	남본부수	검토되어야 할 점		비고
						저작권연계성	보관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90년에 저작권법에 서 규정토록 제정 1909년, 1979년에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법에 의한 고시 후에 원전본 2부 남본 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13조 제 14조 (US Code 1976 edition Vol.4 Copyright S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 음반 	2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법에 의해 남본 남본이행에 한하여 저작권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의회도서관 (국가대표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100볼 소매액의 2배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09년 저작권법에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간 1개월이내 남본 (1부) 무상 추가남본 요구시 지정하는 도서관에 남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15조 (The British Copyright 와 The Statute of An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영도서관 및 6개처에 분산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파운드 (비교적 약하다)
불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37년 Francis I세가 남본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2부 - 5부 남본 (부수 지정) 필름과 음반은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1조 - 제 8조 (Montpellier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 음반 필름 	1부 ~ 6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과 연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는 국립 도서관, 지방은 교육성이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 5만 프랑까지 중벌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6년 도서판법에 의하여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간후 도서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무상 남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18조, 20조, 22조, 23조, 24조 (독일도서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 음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과 연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국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3년 도서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 남본 일반출판사 등에는 실미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12조 (도서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 	2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법과는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가의 5배

IV. 한국 정보유통체제(안)

1. 현 황

- ① 대학도서관의 일부 및 대덕연구단지 도서관간에 상호협력체제가 형성되어 있음.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산화목록 네트워크 편성작업을 추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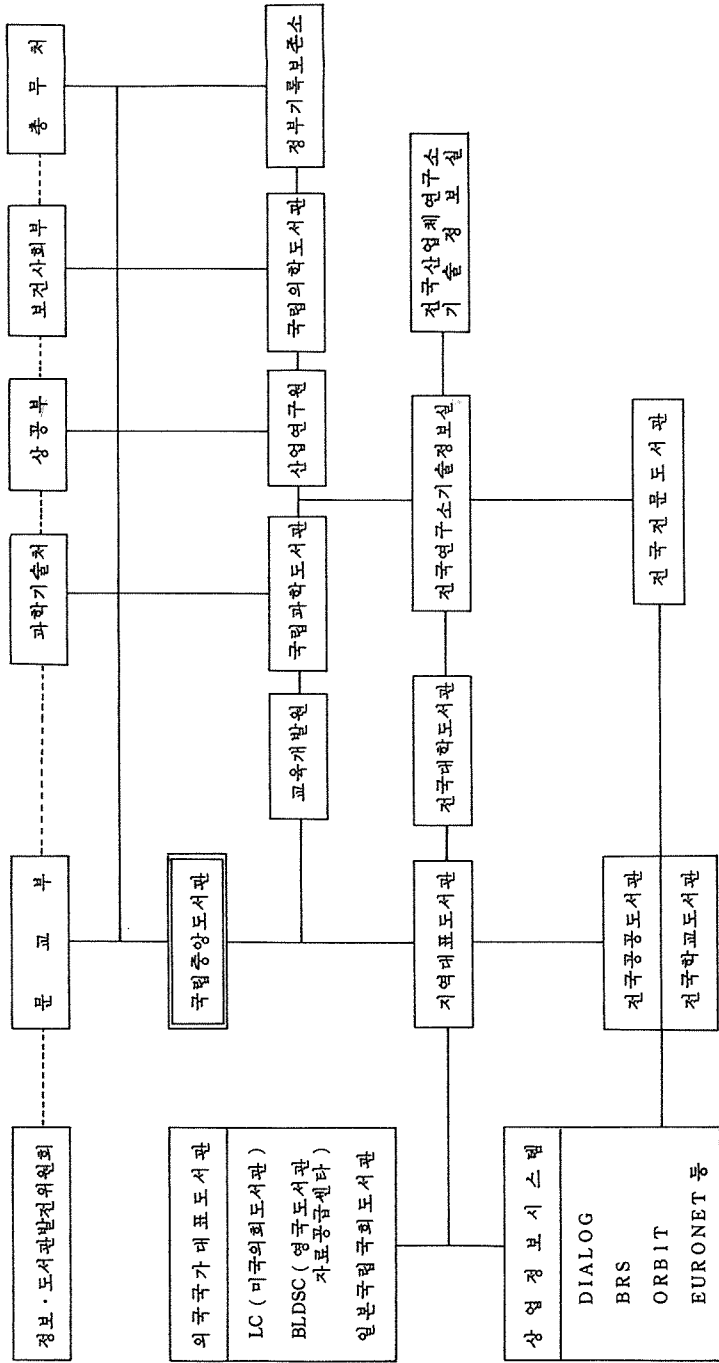
2. 문 제 점

- ①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이 전무상태이며 행정부내에 주관부서가 없음.
- ② 전국수준의 망라적 협력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③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협력체제도 유기성이 없음.

3.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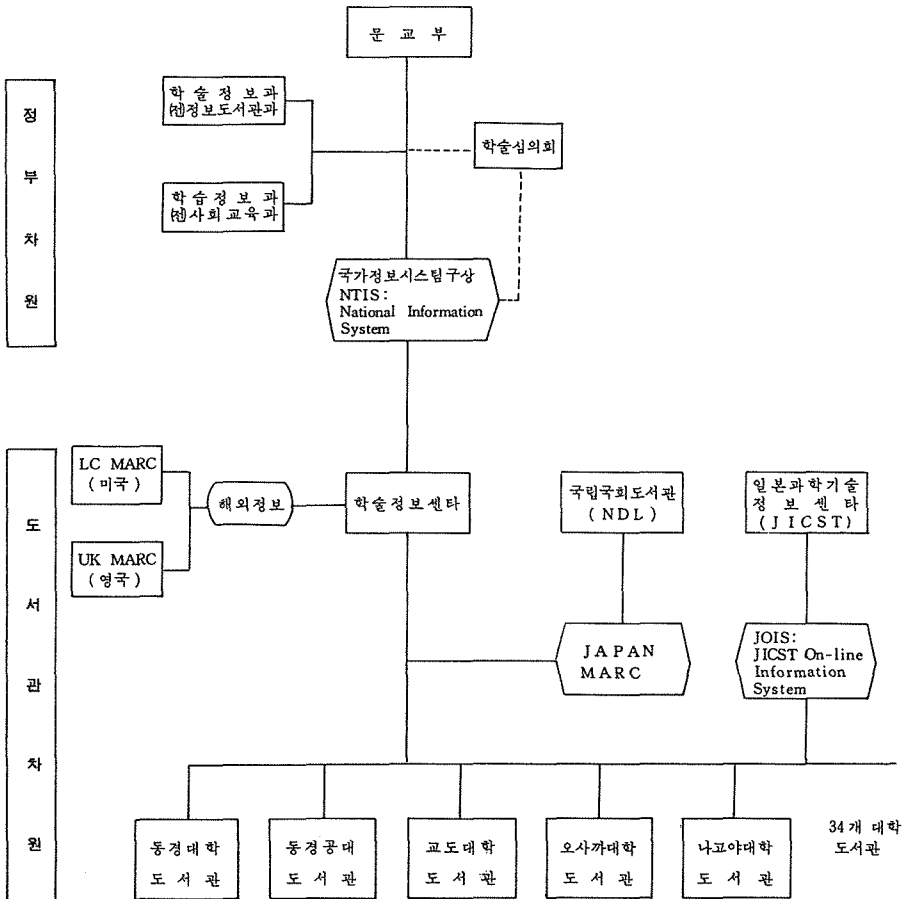
- ① 도서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시안이 필요함.
- ②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협력체제 사항을 명문화함.
- ③ 적정예산의 투입이 요망됨.

한국의 정보유통체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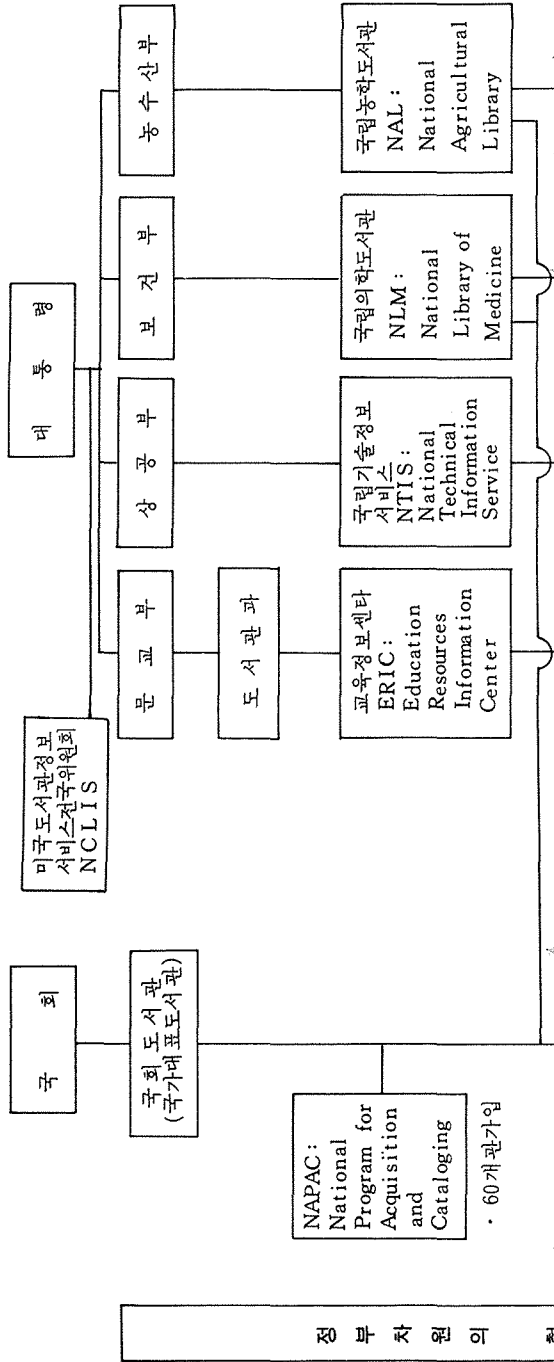
일본도서관의 정보유통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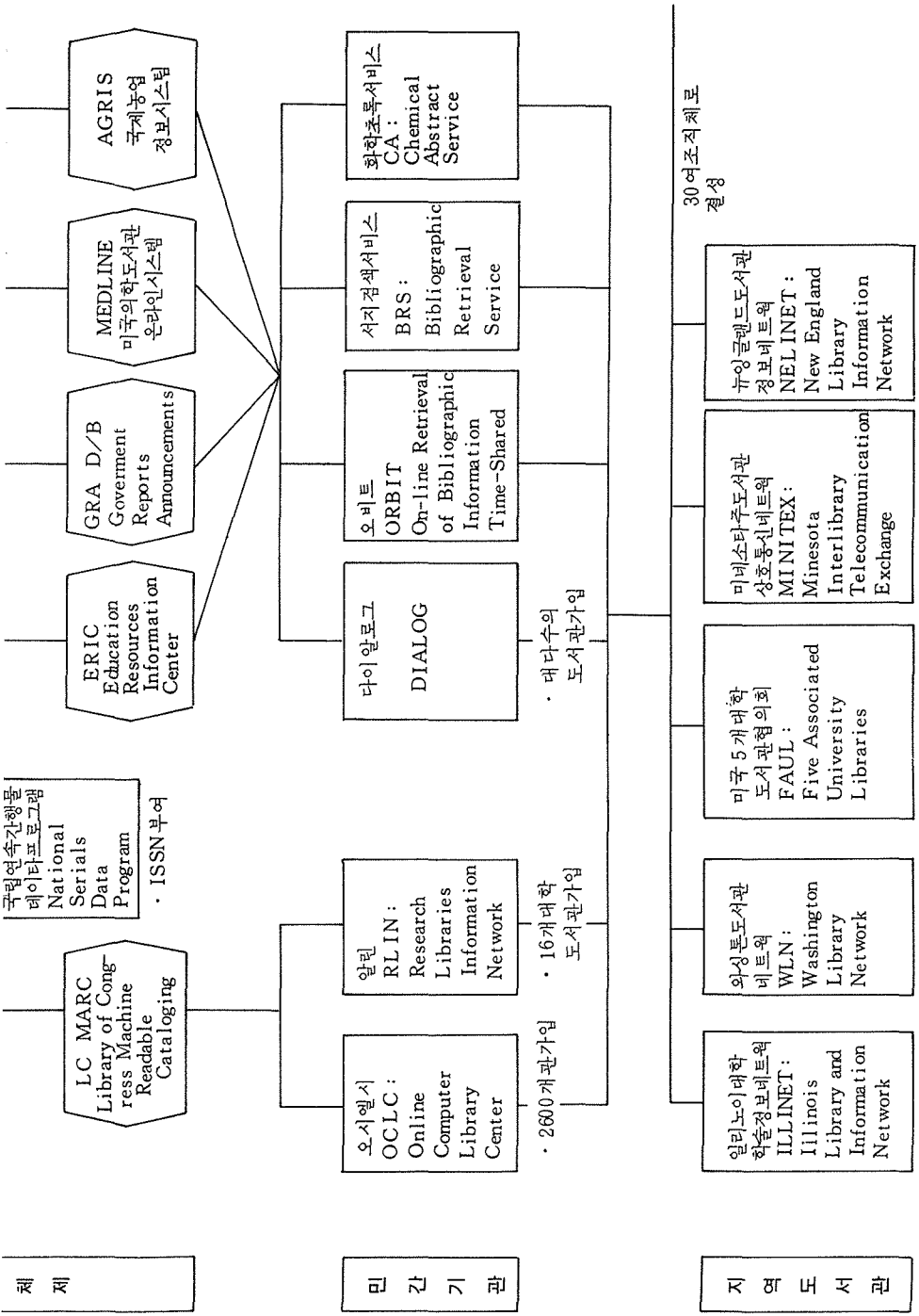
- 특징 : 1. 영국과 미국의 정보유통체제의 혼합형임
 2. 정보유통체제 구축을 위한 집중투자
 3. 일본특유의 공익성을 강조한 정보유통체제로 계획



미국도서관의 정보유통체제

특징 : 1. 유기적인 정부기관간의 연계성유지
 2. 민간기관의 참가
 3.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립에 따른 네트워크 운영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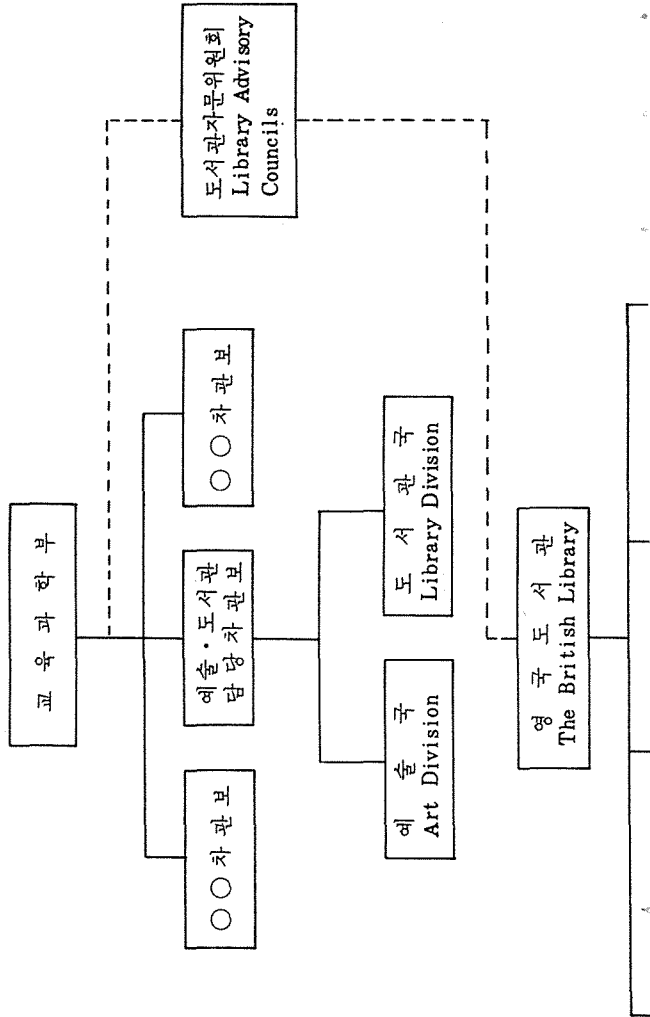
민간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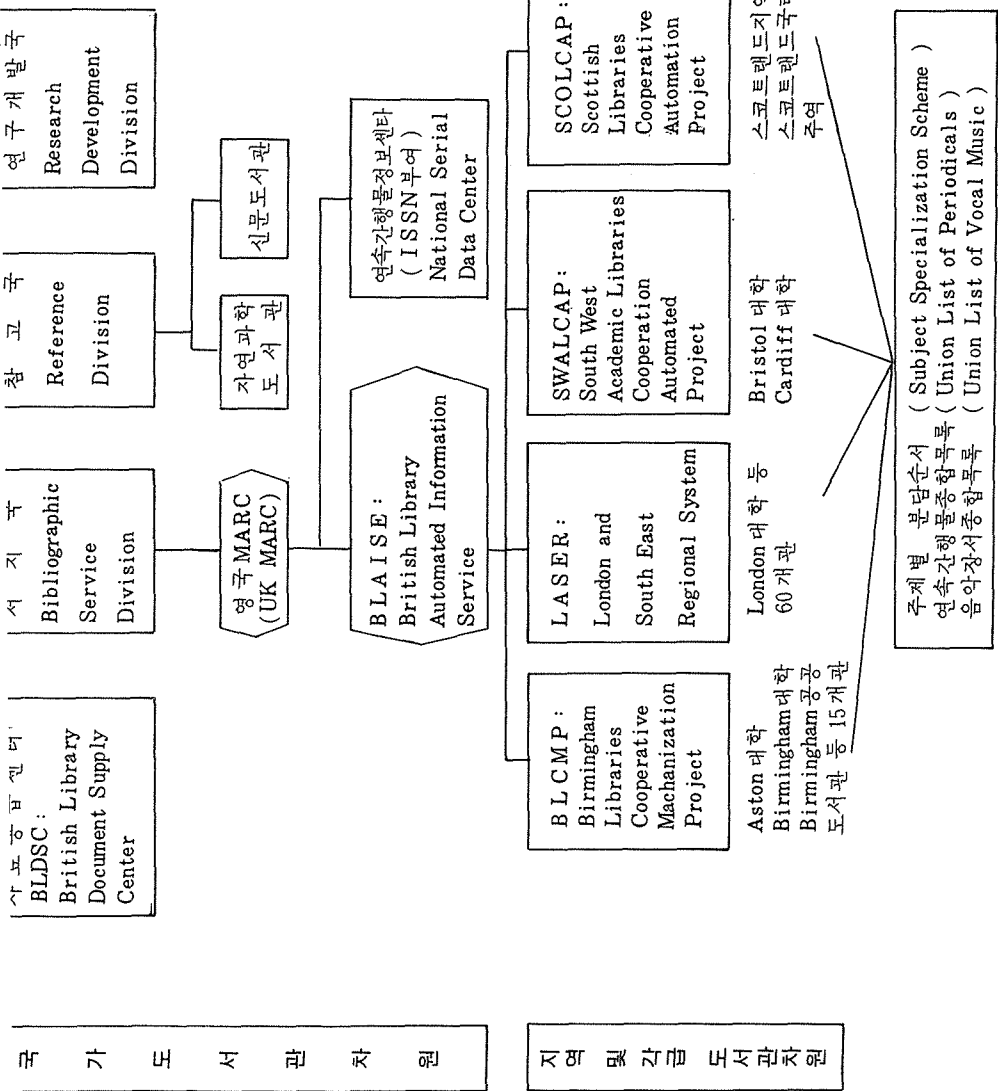
지경도서관

영국도서관의 정보유통체제

- 특징 : 1. 국가의 원대한 계획으로 주도
 2. 영국도서관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주체
 3. 민간기관의 개입 불용
 4. 중앙집권형식의 대표적 사례

정 부 차 원





국가도서관차원

지역 및 각급 도서관차원

주제별 분담순서 (Subject Specialization Scheme)
 연속간행물종합목록 (Union List of Periodicals)
 음악장서종합목록 (Union List of Vocal Music)

V.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규모

1. 현 황

- ① 전체 예산액중 도서관사업비는 5%에 불과함.
- ② 도서관 신규사업의 억제로 예산증액이 곤란한 실정임.

2. 문 제 점

- ① 자료구입비의 절대부족으로 중앙도서관의 문헌정보 제공능력의 상실(서울대학교 도서관의 50%)
- ② 국가대표도서관의 고유기능인 정보의 자동화사업 및 서지편찬사업, 지도협력사업 전개 불가능
- ③ 각국의 국립도서관이 담당하는 국제도서관 협력사업에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은 관련사업의 부진으로 낙오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① 도서관사업비의 대폭적인 증액
- ② 예산관계부처에 도서관인식 제고

4. 조치사항

- ① 국가대표도서관의 장기적인 육성책으로 향후 연간예산을 90억이상 배정
- ② 예산조정관계부서에 도서관의 중요성 인식촉구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발전사업비 추정액

단위 : 억원

연도별 사업내용	(1987)	1988	1989	1990	1991	계
1. 도서관정보자료 확충	(2.6)	22.1	23.7	25.0	26.8	100.2
2. 자료정보의 표준화	(0.2)	1.6	0.3	0.4	0.3	2.8
3. 자료보존 및 이용절차개선	(0.1)	0.5	0.6	0.7	0.8	2.7
4. 도서관업무의 자동화	(0.6)	21.5	25.5	41.0	27.2	115.8
5. 권역문화유산의 진흥	(0.4)	1.2	1.3	1.3	1.4	5.6
6. 국가서지활동의 강화	(0.4)	0.9	1.9	1.3	2.1	5.6
7. 국내도서 관할력체계 구축	(-)	-	-	-	-	-
8. 국내각급도서관지 도지원	(0.3)	11.4	11.4	11.4	11.4	45.9
9. 도서관인 자질향상	(0.2)	7.5	8.3	8.3	8.3	32.6
계	(4.8)	66.7	72.0	89.4	78.3	311.2